

예산총칙

제1조 2024년도 일반·기타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6,904,221,482	207,126,644
일반 회 계		5,700,679,216	171,020,376
특별 회 계		1,203,542,266	36,106,268
공 기 업 특 별 회 계	공 기 업 특 별 회 계	285,295,704	8,558,871
	① 상 수 도 사 업	135,559,668	4,066,790
	② 하 수 도 사 업	149,736,036	4,492,081
	기 타 특 별 회 계	918,246,562	27,547,397
	① 의 료 급 여 기 금	421,144,500	12,634,335
	② 수 질 개 선	3,324,280	99,728
	③ 풍 영 정 천 유 지 용 수 공 급 사 업	341,495	10,245
	④ 하 남 3 지 구 도 시 개 발	1,413,810	42,414
	⑤ 택 지 개 발 사 업	39,784	1,194
	⑥ 교 통 사 업	25,047,350	751,421
	⑦ 광 역 교 통 시 설	4,457,342	133,720
	⑧ 학 교 용 지 부 담 금	5,938,227	178,147
	⑨ 산 업 단 지	3,395,098	101,853
	⑩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	68,853,419	2,065,603
	⑪ 도 시 철 도 사 업	182,128,620	5,463,859
	⑫ 소 방	202,162,637	6,064,879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 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 와 같다.

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“해당없음”

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“12,830,328천원” 으로 한다.

제7조 일반 및 특별회계(공기업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발행액은 “210,000,000천원” 으로 한다.
지방채차입한도액(기본한도)은 “237,500,000천원” 으로 한다.

제8조 「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」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간 또는 타 비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.